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
----------	----

제출연월일 : 2005. 11. 29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혁신 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우리시에 승인된 한시정원을 보강하고, 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별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행정혁신분야 한시정원 보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총수 증원 : 847명 → 853명 (6명 증)
- 집행기관의 정원 : 831명 → 837명 (6명 증)
- 승인된 한시정원 : 6명(6급1, 7급3, 8급2)

나. 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안 별표)

- 전환내역 : 기능직 9명 → 일반직 9명
(기능9급 : △3명, 기능10급 : △6명 → 일반직 9급 : 9명)

다. 규칙으로 정하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함(안 부칙).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소요경비 추계서 참조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05. 11. 4 ~ 11. 24)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847명”을 “853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831명”을 “837명”으로 한다.

사천시 조례 제479호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조례중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직급별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다음과 같다.
1. 12명(5급 1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 기능10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2명(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53	453	16	132	57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71	364	10	84	38	20	90	65
4급	6	3	1	2				
5급	45	18	2	6	5	1	7	6
6급	169	97	3	19	11	5	28	6
7급	217	116	1	35	10	6	21	28
8급	158	90	3	20	9	4	15	17
9급	76	40		2	3	4	19	8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37	87	6	5	19	2	12	6
6급	5	4			1			
7급	14	12		1	1			
8급	25	18	2		4	1		
9급	52	34	4	4	4		6	
10급	41	19			9	1	6	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847명</u> 으로 하며, 다음 각호 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31명</u> 2. (생략)</p>		<p>제2조(-----) ----- -----<u>853명</u> -----, ----- -----.</p> <p>1. ----- : <u>837명</u> 2. (현행과 같음)</p>		
<p>조례 제479호 부칙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u>한시정원</u>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1. <u>10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2. <u>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u> (신설)</p>		<p>조례 제479호 부칙 ②(한시정원)-----<u>직급별 한시정원</u> 존속기한은-----<u>같다.</u></p> <p>1. <u>12명(5급 1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 기능10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2. <u>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u> 3. <u>2명(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별표중 총합계 중 총계 <u>847</u>, 본청 <u>447</u> 일반직 합계중 총계 <u>656</u>, 본청 <u>356</u>, 읍 <u>19</u>, 면 <u>83</u> 6급중 총계 <u>168</u>, 본청 <u>96</u> 7급중 총계 <u>214</u>, 본청 <u>113</u> 8급중 총계 <u>156</u>, 본청 <u>88</u> 9급중 총계 <u>67</u>, 본청 <u>39</u>, 읍 <u>3</u>, 면 <u>12</u> 기능직 합계중 총계 <u>146</u>, 본청 <u>88</u>, 읍 <u>3</u>, 면 <u>19</u> 8급중 본청 <u>19</u>, 사업소 <u>3</u> 9급중 총계 <u>55</u>, 본청 <u>32</u>, 사업소 <u>5</u>, 읍 <u>1</u>, 면 <u>9</u> 10급중 총계 <u>47</u>, 본청 <u>21</u>, 면 <u>10</u></p>		<p>별표중 총합계 중 총계 <u>853</u>, 본청 <u>453</u> 일반직 합계중 총계 <u>671</u>, 본청 <u>364</u>, 읍 <u>20</u>, 면 <u>90</u> 6급중 총계 <u>169</u>, 본청 <u>97</u> 7급중 총계 <u>217</u>, 본청 <u>116</u> 8급중 총계 <u>158</u>, 본청 <u>90</u> 9급중 총계 <u>76</u>, 본청 <u>40</u>, 읍 <u>4</u>, 면 <u>19</u> 기능직 합계중 총계 <u>137</u>, 본청 <u>87</u>, 읍 <u>2</u>, 면 <u>12</u> 8급중 본청 <u>18</u>, 사업소 <u>4</u> 9급중 총계 <u>52</u>, 본청 <u>34</u>, 사업소 <u>4</u>, 읍 <u>0</u>, 면 <u>6</u> 10급중 총계 <u>41</u>, 본청 <u>19</u>, 면 <u>6</u></p>		

정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 정 원 : 847명 → 853명 (6명 증원 : 6급1, 7급3, 8급2)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천원)	지 급 기 준	비 고
총 계	282,048		
인 건 비	소 계	230,790	· 직급별 2005 예산편성 기준에 의함
	기 본 급	113,357	
	수 당	53,295	
	정액급식비	9,360	
	교통보조비	9,120	
	명절휴가비	14,170	
	가계지원비	23,616	
	연가보상비	7,872	
물건비	기관운영추진비등	9,420	· 기관운영, 부서운영, 정원가산,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특정수행활동비
이전경비	연금부담금 등	41,838	·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 세부내역
불임참조

□ 세부내역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천원)	산출근거
총계		282,048	
○ 인건비		230,790	
- 기본급		113,357	(22,609,200원×1명) + (19,256,400원×3명) + (16,489,200원×2명)
- 수당	소계	53,295	
	기말수당	18,893	113,356,800원×2/12
	정근수당	17,004	113,356,800원×1.8/12
	가족수당	2,160	(360,000원×6명)
	관리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15,238	(3,463,680원×1명) + (3,108,000원×3명) + (2,784,960원×2명)
- 정액급식비		9,360	1,560,000원×6명
- 교통보조비		9,120	(1,560,000원×4명)+(1,440,000원×2명)
- 명절휴가비		14,170	113,356,800원×1/12×1.5
- 가계지원비		23,616	113,356,800원×1/12×2.5
- 연가보상비		7,872	113,356,800원×1/12×1/24×20일
○ 물건비		9,42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9,420	(1,860,000원×1명) + (1,680,000원×3명) + (1,260,000원×2명)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이전경비		41,838	
- 성과상여금		4,800	800,000원×6명
- 연금부담금		18,448	166,552천원 ×11.076%
- 국민건강보험		3,590	166,552천원 ×2.155%
- 연금지급금		15,000	2,500,000원×6명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9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⑥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행정자치부)

○ 3차시범단체(사천시 포함 전국 200개 지자체)

2명(7급 1명, 8급 1명)은 2007. 12. 31일까지 한시정원 책정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전담인력 보강지침(행정자치부)

○ 한시정원 보강 : 2명(7급 1명, 8급 1명) - 2006. 12. 31일까지
- 6급 1명은 무보직 정원 조정 조치

지방행정혁신기구인력 보강지침(행정자치부)

○ 기구보강 : 혁신분권담당 ⇒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 한시정원 보강 : 2명(6급 1명, 7급 1명) - 2007. 6. 30일까지